

#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

제정 2003. 3. 8. 규칙 제392호  
개정 2003. 5.12. 규칙 제393호  
2010. 3. 5. 규칙 제525호  
2012. 1. 2. 규칙 제586호  
개정 2015. 2. 3. 규칙 제659호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의 상·벌,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, 학생증발급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02.03>

**제2조(적용범위)** 학생지원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## 제2장 위원회

**제3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)** ① 학생활동의 지도육성과 학생상벌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5.02.03>

② 위원회는 교학처장, 사무국장, 훈련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, 출석위원

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**제4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
2. 학생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학생회 각종 조직에 관한 사항
4. 학생회예산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5.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6. 특별포상에 관한 사항
7. 징계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.
8. 상벌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02.03>
9. 삭제 <2015.02.03.>
10. 삭제 <2015.02.03.>
11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3장 상벌

**제5조(상벌절차)** 학생의 상벌을 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한다.

**제6조(상벌의 기록)** 상벌은 상벌대장 및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는 교학처장의 요청에 따라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7조(이중상벌 금지)** 상벌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상벌에 대한 의견 청취)** 상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9조(상벌 통보)** ①징계를 위한 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교학처장은 확정된 포상 및 징계처분을 각 부서장 및 전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교내에 공고한다.

**제1절 포상**

**제10조(포상의 종류 및 대상)**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**우등포상** : 당해 학년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3.8이상인 자는 우등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. 다만,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2. **졸업포상** : 졸업을 하는 자로서 재학기간중 타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우수졸업생으로 추천 포상할 수 있다. 다만,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.

종 류	수 상 대 상 ( 기 준 )
최우수상	졸업석차 1위인 자
경기력상	①올림픽대회 입상자 ②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③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④U대회, 동아시아대회 입상자 ⑤기타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
공로상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
우등상(총장 표창장)	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

3. **특별포상** : 재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모범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.

종 류	수 상 대 상 ( 기 준 )
모범체육상(총장 표창장)	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평소 체육지도자로서 소양이 뚜렷한 자
기타 모범상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 및 명예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

4. **입학포상** : 최우수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포상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포상의 추천)** 포상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.

종 류	추천기한	구비서류	추 권 자
우등포상	우등포상 매년 1월	별지1호서식의 추천서	학과장
졸업포상	최우수상	"	"
	경기력상	별지2호서식의 추천서	훈련처장
	공 로 상	별지1호서식의 추천서	교학처장
	우 등 상	"	학과장
특별포상	모범체육상	수 시	훈련처장, 학과장
	기타모범상	"	학과장
입학포상	입학식일자 10일전까지	"	"

**제12조(경기력 포상자의 선정기준)** ①훈련계획에 의한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

②대회에 출전하여 다음 각 호의 성적을 낸 자

1. 올림픽 입상자
2.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
3.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
4. U대회, 동아시아대회 입상자
5. 기타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

**제2절 징계**

**제13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 등)** ①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②근신은 3일 이상 7일 미만으로 한다. 단,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③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된다.

④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. 다만, 가중처벌의 징계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**제14조(징계요청 및 구비서류)** ①징계의 요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.

②징계 요청 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건 경위서 1부.
2. 본인의 진술서 1부.
3. 기타 참고서류

③각 학과장은 징계사유가 발생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생활관 수칙 위반자는 생활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.

④학생지도위원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5조(무기정학의 해제)** 교학처장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의견을 들이 소정의 절차에 의거 무기정학을 해제한다.

**제16조(징계사유 및 범위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에 처한다.

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
1	생활관 제반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	근신 이상
2	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	*
3	본 대학이 설정한 대회출전규정 제12조에 관련된 자	*
4	본 대학이 설정한 체력기준에 지극히 미달한 자	*
5	부정시험자로 조각, 제공하다가 적발된 자	유기정학 이상
6	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	무기정학 이상
7	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	*
8	학교 내에서 정지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	*
9	흡연을 하였거나 본 대학에 허가 없이 흡주한 자	*
10	허가 없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주도한 자	유기정학 이상
11	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자	근신 이상
12	폭력을 행사한 자	유기정학 이상
13	성희롱을 한 자	유기정학 이상
14	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

**제17조(봉사명령)** ①제1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② 봉사명령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무기정학 이상 해당자 : 30일 이상
2. 유기정학 이상 해당자 : 20일 이상
3. 근신 이상 해당자 : 10일 이상

**제18조(징계대상자 퇴학제한)** 제1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을 할 수 없다.

**제19조(자격제한 및 수혜금지)**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각종 간부 직책 및 장학금 등 기타수혜 혜택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#### 제4장 학생단체 및 학생지도

**제20조(단체의 목적)** 학생회 운영상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단체(동아리)를 두어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상호 친목과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면학분위 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단체의 규모)** 신규 단체의 규모는 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을 원칙

으로 하며 운영목적이 동일할 경우 통합 등을 통하여 동아리의 난립을 예방하며 건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.

**제22조(단체조직 및 승인)** 학생회 산하단체(동아리)를 조직할 때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단체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1학년은 1학기 홍보 후 1학년 2학기에 등록한다.

1. 단체승인 신청서 1부
2.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
3. 서약서 1부
4. 회원명단 1부
5. 단체회칙 1부
6.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1부

**제23조(집회·행사허가원 제출 절차)** ① 집회·행사허가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3일 이전에 학생과로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단체의 집회 및 행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집회 및 행사에는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비승인 단체의 구성 및 승인 단체의 활동금지)** ①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의 구성은 이를 금지한다.

② 승인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총장은 그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자는 학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25조(학생단체의 회칙 개정 등의 신고)** 학생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개정되거나 임원이 개선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기타 사항)** 위 이외의 동아리활동의 승인 및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 제5장 학생증 발급

**제27조(학생증의 발급)** ① 총장은 학년 초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 학생증을 발급한다.<개정 2015.02.03>

② 학생이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학처에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02.03>

**제28조(발급권자)**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.

**제29조(유효기간)**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졸업 시까지로 한다.

**제30조(무효 및 회수)**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<개정 2015.02.03>

1.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
2. 당해 학생이 졸업, 휴학, 퇴학 또는 제적되었을 때
3. 기록 첨부 날인사항을 임의로 정정하거나 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 하였을 때 <개정 2015.02.03>

**제31조(반환)** 학생이 졸업, 휴학, 제적 등 학생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학생증을 교학처에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학생증의 소지)**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.

**제33조(장부 비치)** 학생증 발급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392호, 2003. 3. 8.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. 3. 1.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시행 이전 한국체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(2001. 9. 1. 제 339호)에 의거 시행한 학생 상·벌(포상·징계), 장학,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, 학생증발급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제393호, 2003. 5.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. 3. 1.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제525호, 2010. 3. 5.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586호, 2012. 1. 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 659호, 2015. 2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

### 포상대상자 추천서

학과		전공(종목)	
성명		학번	
생년월일		연락처	- -
<추천요지>			

상기 학생을 ( )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직 성명 (인)

###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

별지 제2호 서식

### 경기력상 대상자 추천서

부명	부추천순위	성명 (학번)	경기실적	비고

상기 학생은 본교 재학 중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경기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경기력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부 지도교수 (인)

지도교수 (인)

훈련처장 (인)

※ 추천요령

1. 각 부에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대회 (올림픽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안게임, 유니버시아드대회 등) 다수 입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 추천 순위로 선정합니다.
2. 유도, 하키, 핸드볼은 남, 여 구분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